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9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6.

발 의 자 : 김현정 · 김문수 · 민병덕
이강일 · 박정현 · 황명선
박홍배 · 복기왕 · 이인영
권향엽 · 송옥주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366조의2는 주주총회의 질서유지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함.

그런데 실제 주주총회 과정에서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불공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,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과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방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, 주주총회가 공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66조의2).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발행주식총수(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)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366條의2(總會의 秩序維持) ① 總會의 議長은 定款에서 정함 이 없는 때에는 總會에서 選任 한다. <단서 신설> ② · ③ (생 략)	第366條의2(總會의 秩序維持) ① ----- ----- -----. 다만, 발행주식총수(제34 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 의 수는 제외한다)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 진 주주는 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